

2018년 4월 21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8. 4. 23.(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8. 4. 23.(월) 10:00 ~ 2018. 4. 25.(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8. 5. 10.(목)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상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②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설정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증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 ③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이상 이후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등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 3】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면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기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③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 다른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 ④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민법은 채권자의 이중의 채권만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불법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④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 5】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③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문 6】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7】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문 8】 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 ③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 9】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 필요는 없다.
- ② 장래의 채권은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문10】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역시 무효로 된다.
- ②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④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문11】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②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령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 사무처리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2】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②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문13】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甲 단독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가 甲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고, 달리 甲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甲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③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문15】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고, 범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따라서 범인의 대표자가 범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으로도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6】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문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 ③ 설령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여전히 그 토지에 관한 소유자이므로, 매도인은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의 신축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문18】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②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건축 중인 건물 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제3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줄기로 약정한 때에 이러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문19】중물 또는 부합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중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② 집합건물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물 내지 중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친다.
- ③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으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④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중물을 제외할 수 있고 중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0】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를 진다.

【문21】소송행위 주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 예컨대 주소보정기간, 기일지정신청기간, 재심제척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아 모두 추후보완이 될 수 없다.
- ②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허위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그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관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이나,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고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사유에 해당된다.

【문22】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 대신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요건사실로 하므로, 임대인은 ㉠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사실, ㉡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사실, ㉢ 임대차종료의 원인이 되는 사실(임대차 기간만료, 해지)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의 전차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면한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는,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23】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는 규정은 본래 당사자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제1심의 소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이 항소기록 송부를 잘못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
- ④ 당사자가 상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상소법원이 그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있고,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소법원에 상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24】 대여금 청구의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여금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원·피고 간의 종전의 채권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나 추심권한만 원고의 채권자(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 채무자(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추심의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본안 전 항변이다.
- ② 대여금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채권이 전부 이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압류·전부의 항변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에 관한 항변이다.
- ③ 대여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되었다는 항변의 요건사실은, ㉠ 甲이 채권자가 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위 압류·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은 원칙적으로 주장·증명될 필요는 없다.
- ④ 채권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문25】 인지 보정명령 및 인지액의 환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가. 당사자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부족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응한 때에는 상급심은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 있다.
- 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만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 라.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청구를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더라도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마. 당사자가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은 고려할 필요 없이 최초 납부된 인지액을 기준으로 환급할 금액을 계산한다.

- ① 가, 라 ② 가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문26】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廳) 외에 반출함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자인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법원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은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여 소장·신청서·상소장 등의 부분 및 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소송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는 경우 그 소송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 아니한다.
- ④ 화해권고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분실되는 바람에 사건의 종국처리가 마쳐지고 확정증명서까지 발급된 이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재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27】 집행관련 이의의 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이의의 소제기 당시 이미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원고적격자이지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도 있다.
- ③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이 목적을 이루어 완결되거나 종국적인 취소로 종료된 때, 취하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한다.
- ④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 정도는,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단순히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것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문28】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문서송부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②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와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 ③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송부된 문서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인 경우 상소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문29】 제3자 소송당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원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집행채무자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 ②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더라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제1심에 한정된다.
- ④ 선정행위가 있는 후에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문30】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법원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③ 민사소송법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또는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문31】 증거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면 서증으로 채택한다.
 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여비와 일당은 지급한다.
 라. 검증 종료 전에 검증현장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 검증조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3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
- 나.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화해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다.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라도 판결의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확정자판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의신청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33】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고,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 ②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상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
- ③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어야만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

【문34】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과 같은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에 앞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선행자백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한 때에는 자백의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까지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③ 일단 자백한 당사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문35】 기일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변론기일 내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었다면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변경 전에 1회, 변경 후에 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1월은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문36】 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라도 본인이 찾아와 송달서류를 교부받으면 이는 해당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한 것으로 되어, 영수증을 받은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② 최초의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같은 당사자에 대한 최초 공시송달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판결송달을 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 할 경우 게시한 날부터 즉시 상소기간이 진행되고, 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늘어거나 줄일 수 없다.
- ④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함이 기존의 확립된 판례이다.

【문37】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의 증인신문사항을 동시에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상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 ③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의할 수 있고,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④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교부하면 된다.

【문38】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는 민법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 ② 특정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의 점유를 증명하면 그 사이 점유 계속의 추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계속은 추정될 수 없다.
- ③ 점유가 상속된 경우, 원고는 상속일부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④ 점유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한 시점의 확정 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점유사실만 인정되면 된다.

【문39】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다.
- ②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성립의 인부를 기재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된 때라도 인부를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③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그대로 증거자료가 된다.

【문40】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본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라도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부적법하게 된다.
-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때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 ③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과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한 개의 전부판결로 선고된 경우, 원고가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한 때에는 본소청구 뿐만 아니라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문 1】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세무공무원 甲은 A로부터 'A를 추가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얼마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내심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이며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A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에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것을 집에 와서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가 세무조사 관련 일이 잘 풀리지 않자 1억 원을 전부 반환하였더라도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甲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요청하였고, 이에 불심이 깊은 이동통신회사 구조조정본부장이 회사에 설명하여 회사자금으로 불사 건축비용을 시주하고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더라도, 甲에게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무상으로 받은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므로,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그 자체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 ④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 2】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丙에게 양도한 후 丙이 피해자를 속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 3】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②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④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범한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 ③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 ④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나'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였는데,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다면, 증인은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증인이 위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문 5】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다면 법인에 대하여도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문 6】 공범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② 배임증제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③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문 7】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명의 경찰관 모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거나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문 8】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 ②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고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된다.
-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9】 사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및 甲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USIM Chip) 읽기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발송제한을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이 전산상 자동처리된 것에 불과하다면,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甲이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A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 A소유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 준 후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면,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근저당권자인 甲이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甲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A에게 매도한 甲이 A로부터 함께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매매대금 초과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매매대금을 건네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피해자 A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 상태로 되게 하여 스스로 나체 상태를 촬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甲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거나 A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甲이 피해자 A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甲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남자인 甲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A가 甲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 A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골프장 여종업원 A가 거부의를 발했음에도 甲이 당일 컨트리클럽 회장과 골프를 친 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A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A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A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약식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이라도, 정식 재판의 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자약식명령을 송달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 올린 날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 ②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라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판단을 할 수는 없다.
- ②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한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공판조서 기재 내용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③ 공판조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 ④ 공판조서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당시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재촉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고기일 연기결정 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 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 ②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④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포괄죄인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지만, 이때에도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도 있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
- ② 기피신청 이후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사건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려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기피신청 기각결정 후 즉시항고 없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속기간 산입이 개시되는 시점은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부터이다.
- ④ 회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회피신청 법원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문18】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닛으로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모용자 乙은 피고인이 아니고 甲만 피고인으로 된다.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 ② 甲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甲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위 甲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 ③ 공판심리 중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된다.
- ④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이에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으로서 乙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으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피고인표시 경정결정을 甲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이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 하고,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부분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되,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사실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② 상소기록을 조제함에 있어, 판결문의 장수 표시에 있어서는 쪽수에는 계산하되 장수의 표기(이른바 ‘넘버링’)를 하지 않는다.
- ③ 공판사건에 있어서 구속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를 따로 분류하여 기록 첫 부분의 공소장 다음에 편철하되 그 상호간에는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 편철한다.
- ④ 증거목록의 순서는, 검사 증거서류등 목록, 검사 증인등 목록, 피고인 증거서류등 목록, 피고인 증인등 목록, 직권 증거서류등 목록, 직권 증인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거서류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인등 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문 1】 집행채권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합유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할 수 있다.
-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 도급계약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 대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③ 양도성이 없는 권리는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다.
- ④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압류금지채권 금원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2】 매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만의 경매에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면 매각으로 말소된다.
- ②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③ 토지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 건물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 흠결사항이 있는 등 매각기일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더라도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고,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새매각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문 3】 경매대상 목적물 및 집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면·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지하 7층, 지상 20층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축조되어 현재 그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하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③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 ④ 강제경매의 대상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채무자 소유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문 4】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명령은 당연히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상속인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에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 ③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서, 제3채무자는 이의·취소를 신청하거나 보전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문 5】 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1심 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는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지는 아니한다.
- ④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문 6】 강제집행개시 요건인 집행권원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개시를 위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자체이지 집행정본이 아니다.
- ②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 명령의 집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을 송달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③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 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인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문 7】 집행보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②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이면 가능하다.
-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신청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문 8】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증서는 기관력이 없으므로 증서에 적힌 청구가 당초부터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③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④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의사표시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문 9】 경매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단독으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은 가능하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수소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집행법원이 경매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10년을 도과한 경우라면 경매신청을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문11】 1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 원), 2순위로 전세권(전세금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절차비용(집행비용)으로 500만 원이 소요된 사례에서 최저매각가격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법원은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른 통지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위 경매절차를 속행시키려면 위 ①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④ 위 사안에서 2순위 전세권자의 신청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은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12】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매각기일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의 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입찰마감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일체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13】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14】 부동산 경매절차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②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위 ②항의 경우,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위와 같이 담보책임을 물을 경우에 배당의 전후에 관계없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할 수도 있고,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도 있다.

【문15】 보전집행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 ② 주식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자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주식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 ④ 무효가 아닌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해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문16】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다.
- ②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④ 집행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이를 할 수 있다.

【문17】 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서 일부 채권자의 기재를 누락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등기일은 2008. 8. 25.이다)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0. 11. 1.이다)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④ 선행압류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문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해지 후인 98. 3. 4. 위 임차보증금채무가 5,000만 원으로 확정)에 관하여 96. 12. 7. 甲 가압류 4,000만 원, 96. 12. 16. 乙 압류 3,000만 원, 97. 6. 26.(전부명령 제3채무자에의 송달일) 甲 본압류 및 전부 4,000만 원이 이루어진 경우, 甲의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②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후 선행의 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고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으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사유, 집행채권의 소멸·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 및 압류한 다른 채권자 등 제3자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소멸하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

【문19】 보전처분신청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지 그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
- ③ 법원이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로소 담보제공을 명하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문20】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 ③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상한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문 1】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 ②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예정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문 2】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가 가등기관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가등기관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 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 ②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 ③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하여 판별한다.
- ④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전에 마쳐진 것이라면 그 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 3】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 ②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 ③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에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문 4】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

【문 5】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④ 등기필정보가 없는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6】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②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매계약서와 가등기할 때 통지받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저장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장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문 7】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나,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다.
-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8】등기신청의 보정 · 취하 ·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의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
-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당사자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 ③ 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9】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중증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가 없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가 없다.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정관과 이사회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0】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1】공탁통지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 ②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③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된 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은 발생한다.
- ④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

【문12】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보기>

- ㄱ.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 및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한다.
- ㄴ. 담보권리자가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선행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다면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담보취소결정正本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이전임).
- ㄹ.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13】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3천만 원이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공탁을 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보기>

- ㄱ. 甲은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ㄴ.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丙은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 ㄷ. 양수인 丁은 다른 피공탁자인 乙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ㄹ. 만약, 甲이 채권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채권가압류만을 이유로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한 경우 추후 甲은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14】 공탁물수령권자의 이익유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도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채무금액에 다름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이상 그 공탁금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익 없이 수령하였다면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④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이익을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5】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문16】 공탁금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③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착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공탁금지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어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문1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몰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 ④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18】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제공이나 수령거부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700만 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乙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1,000만 원)을 공탁할 수 있다.
- ③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하여야 한다.

【문19】 재외국민 등의 공탁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20】 공탁물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은 계좌입금 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 ③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에 규정한 서류(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도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 없이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공탁통지서를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18년 4월 21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8. 4. 23.(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8. 4. 23.(월) 10:00 ~ 2018. 4. 25.(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8. 5. 10.(목)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면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채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부채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도 부채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기므로 부채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③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 다른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 ④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민법은 채권자의 이중의 채권만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까지도 불법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④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 3】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③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문 4】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②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설정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 5】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 ③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이상 이후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등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 6】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②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
- ③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 7】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 필요는 없다.
- ② 장래의 채권은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문 8】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9】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관한 고려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문10】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②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문11】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甲 단독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가 甲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고, 달리 甲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甲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③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2】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역시 무효로 된다.
- ②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④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문13】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②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령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 사무처리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4】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④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문1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 ③ 설령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여전히 그 토지에 관한 소유자이므로, 매도인은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의 신축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문1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문17】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고,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으로도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8】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 ②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건축 중인 건물 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제3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때에 이러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문19】중물 또는 부합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중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② 집합건물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물 내지 중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친다.
- ③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으면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④ 중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중물을 제외할 수 있고 중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20】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를 진다.

【문21】소송행위 주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 예컨대 주소보정기간, 기일지정신청기간, 재심제척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보아 모두 추후보완이 될 수 없다.
- ②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허위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그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관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이나,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고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보완사유에 해당된다.

【문22】대여금 청구의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여금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원·피고 간의 중전의 채권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나 추심권한만 원고의 채권자(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 채무자(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추심의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본안 전 항변이다.
- ② 대여금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채권이 전부 이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압류·전부의 항변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에 관한 항변이다.
- ③ 대여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되었다는 항변의 요건사실은, ㉠ 甲이 채권자가 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위 압류·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은 원칙적으로 주장·증명될 필요는 없다.
- ④ 채권에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문23】인지 보정명령 및 인지액의 환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가. 당사자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부족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응한 때에는 상급심은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 있다.
- 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만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 라.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청구를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더라도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마. 당사자가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은 고려할 필요 없이 최초 납부된 인지액을 기준으로 환급할 금액을 계산한다.

- ① 가, 라 ② 가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문24】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 대신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요건사실로 하므로, 임대인은 ㉠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사실, ㉡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사실, ㉢ 임대차종료의 원인이 되는 사실(임대차 기간만료, 해지)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②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 전차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더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인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면한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는,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25】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는 규정은 본래 당사자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 제1심의 소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이 항소기록 송부를 잘못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된다.
- ④ 당사자가 상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상소법원이 그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있고,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소법원에 상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26】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원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집행채무자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 ②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더라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제1심에 한정된다.
- ④ 선정행위가 있는 후에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문27】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법원은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③ 민사소송법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또는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문28】 증거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면 서증으로 채택한다.
 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여비와 일당은 지급한다.
 라. 검증 종료 전에 검증현장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 검증조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9】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廳) 외에 반출함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자인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법원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은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여 소장·신청서·상소장 등의 부분 및 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소송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는 경우 그 소송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 아니한다.
- ④ 화해권고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분실되는 바람에 사건의 종국처리가 마쳐지고 확정증명서까지 발급된 이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재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30】 집행관련 이의의 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이의의 소제기 당시 이미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원고적격자이지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도 있다.
- ③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이 목적을 이루어 완결되거나 종국적인 취소로 종료된 때, 취하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한다.
- ④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 정도는,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단순히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것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문31】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문서송부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②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와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 ③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송부된 문서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인 경우 상소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문32】 기일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변론기일 내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그 준비서면에 진술간주 되었다면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변경 전에 1회, 변경 후에 1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2회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1월은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문33】 공시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본인이 찾아와 송달 서류를 교부받으면 이는 해당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직접 송달한 것으로 되어, 영수증을 받은 때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② 최초의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같은 당사자에 대한 최초 공시송달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데, 판결송달을 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 할 경우 게시한 날부터 즉시 상소기간이 진행되고, 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늘어거나 줄일 수 없다.
- ④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함이 기존의 확립된 판례이다.

【문34】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양쪽의 증인신문사항을 동시에 송달하는 방법 등으로 절차상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 ③ 상대방이 증인신문 당시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의할 수 있고,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④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교부하면 된다.

【문3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

나. 재판상 화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화해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라도 판결의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의신청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36】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 제기가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가 되고, 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 ②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제1심에서의 무권대리행위를 항소심에서 추인하여도 무방하다.
- ③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어야만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

【문37】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과 같은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에 앞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선행자백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한 때에는 자백의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까지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③ 일단 자백한 당사자는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문38】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는 민법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 ② 특정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의 점유를 증명하면 그 사이 점유 계속의 추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계속은 추정될 수 없다.
- ③ 점유가 상속된 경우, 원고는 상속일부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④ 점유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한 시점의 확정 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점유사실만 인정되면 된다.

【문39】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다.
- ②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성립의 인부를 기재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된 때라도 인부를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 ③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그대로 증거자료가 된다.

【문40】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본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라도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부적법하게 된다.
- ②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때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
- ③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과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한 개의 전부판결로 선고된 경우, 원고가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한 때에는 본소청구 뿐만 아니라 반소청구에 대하여도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문 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②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④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범한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 ③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 ④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나’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였는데,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다면, 증인은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증인이 위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문 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 甲은 A로부터 ‘A를 추가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얼마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고, 내심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이며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A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에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것을 집에 와서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가 세무조사 관련 일이 잘 풀리지 않자 1억 원을 전부 반환하였더라도 1억 원 전부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甲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요청하였고, 이에 불심이 깊은 이동통신회사 구조조정본부장이 회사에 설명하여 회사자금으로 불사 건축비용을 시주하고 세법상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더라도, 甲에게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무상으로 받은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므로,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그 자체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 ④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 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丙에게 양도한 후 丙이 피해자를 속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문 5】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명의 경찰관 모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위 각 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거나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문 6】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 ②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고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된다.
-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 7】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다면 법인에 대하여도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문 8】공범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② 배임증제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③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문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피해자 A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 상태로 되게 하여 스스로 나체 상태를 촬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甲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거나 A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甲이 피해자 A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甲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남자인 甲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A가 甲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 A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골프장 여종업원 A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甲이 당일 컨트리클럽 회장과 골프를 친 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A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A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A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문10】 사기죄 및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및 甲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USIM Chip) 읽기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발송제한을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이 전산상 자동처리된 것에 불과하다면,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甲이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A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 A소유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 준 후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면,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근저당권자인 甲이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甲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A에게 매도한 甲이 A로부터 함께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경우,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매매대금 초과 사실을 알았더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매매대금을 건네받은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라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판단을 할 수는 없다.
- ②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한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공판조서 기재 내용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③ 공판조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 ④ 공판조서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당시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재촉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고기일 연기결정 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 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약식절차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이라도, 정식 재판의 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자약식명령을 송달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 올린 날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 ②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
- ② 기피신청 이후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사건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려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③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기피신청 기각결정 후 즉시항고 없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속기간 산입이 개시되는 시점은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부터이다.
- ④ 회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회피신청 법원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문16】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모용자 乙은 피고인이 아니고 甲만 피고인으로 된다.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공소장을 정정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 ② 甲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甲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위 甲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 ③ 공판심리 중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된다.
- ④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고 이에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으로서 乙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으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피고인표시 경정결정을 甲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이 소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 ②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④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지만, 이때에도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도 있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 하고,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부분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되,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사실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② 상소기록을 조제함에 있어, 판결문의 장수 표시에 있어서는 쪽수에는 계산하되 장수의 표기(이른바 ‘넘버링’)를 하지 않는다.
- ③ 공판사건에 있어서 구속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를 따로 분류하여 기록 첫 부분의 공소장 다음에 편철하되 그 상호간에는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 편철한다.
- ④ 증거목록의 순서는, 검사 증거서류등 목록, 검사 증인등 목록, 피고인 증거서류등 목록, 피고인 증인등 목록, 직권 증거서류등 목록, 직권 증인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거서류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인등 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문 1】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명령은 당연히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상속인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도 그 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에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 ③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서, 제3채무자는 이의·취소를 신청하거나 보전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문 2】 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1심 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는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지는 아니한다.
- ④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문 3】 강제집행개시 요건인 집행권원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집행개시를 위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자체이지 집행정본이 아니다.
- ②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 명령의 집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을 송달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③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 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인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문 4】 집행채권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유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할 수 있다.
- ②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 도급계약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 대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③ 양도성이 없는 권리는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다.
- ④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압류금지채권 금원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5】 매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만의 경매에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면 매각으로 말소된다.
- ②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③ 토지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 건물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 흠결사항이 있는 등 매각기일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더라도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고,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새매각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문 6】 경매대상 목적물 및 집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면·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지하 7층, 지상 20층의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축조되어 현재 그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하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③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 ④ 강제경매의 대상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채무자 소유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문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수소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잠정처분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집행법원이 경매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10년을 도과한 경우라면 경매신청을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는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문 8】 1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 원), 2순위로 전세권(전세금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절차비용(집행비용)으로 500만 원이 소요된 사례에서 최저매각가격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법원은 제102조(납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따른 통지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위 경매절차를 속행시키려면 위 ①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납을 만만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④ 위 사안에서 2순위 전세권자의 신청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은 위 ①번, ②번의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 9】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매각기일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의 종결 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입찰마감시각까지 하여야 한다.
- ③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일체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10】 집행보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②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이면 가능하다.
-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신청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문11】 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증서에 적힌 청구가 당초부터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③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④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의사표시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문12】 경매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단독으로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은 가능하다.

【문13】 보전집행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 ② 주식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도록 한 자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주식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 ④ 무효가 아닌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해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문14】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다.
- ②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④ 집행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이를 할 수 있다.

【문15】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문16】 부동산 경매절차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②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위 ②항의 경우,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위와 같이 담보책임을 물을 경우에 배당의 전후에 관계없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할 수도 있고,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도 있다.

【문17】보전처분신청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단지 그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을 명할 수는 없다.
- ③ 법원이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로소 담보제공을 명하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

【문18】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지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 ③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문19】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있어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면서 일부 채권자의 기재를 누락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등기일은 2008. 8. 25.이다)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0. 11. 1.이다)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였다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④ 선행압류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문20】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해지 후인 98. 3. 4. 위 임차보증금채무가 5,000만 원으로 확정)에 관하여 96. 12. 7. 甲 가압류 4,000만 원, 96. 12. 16. 乙 압류 3,000만 원, 97. 6. 26.(전부명령 제3채무자에의 송달일) 甲 본압류 및 전부 4,000만 원이 이루어진 경우, 甲의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②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후 선행의 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고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으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사유, 집행채권의 소멸·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 및 압류한 다른 채권자 등 제3자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소멸하고,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

【문 1】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 ②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 ③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 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문 2】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

【문 3】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④ 등기필정보가 없는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4】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 ②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예정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③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④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문 5】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 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 ②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 ③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기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④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전에 마쳐진 것이라면 그 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 6】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 ②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매매계약서와 가등기할 때 통지받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저장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장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문 7】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을 위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나,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다.
- ②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8】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의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
-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당사자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 ③ 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9】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중증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가 없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공유지분보다 더 많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가 없다.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0】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그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11】공탁통지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 ②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③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된 부재로 반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력은 발생한다.
- ④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

【문12】 공탁물수령권자의 이익유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 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도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이상 그 공탁금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익 없이 수령하였다면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④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이익을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3】 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문1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③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착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어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문15】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보기>

- ㄱ.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 및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한다.
- ㄴ. 담보권리자가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선행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다면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이전임).
- ㄹ.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16】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3천만 원이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공탁을 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보기>

- ㄱ. 甲은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ㄴ.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丙은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없다.
- ㄷ. 양수인 丁은 다른 피공탁자인 乙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ㄹ. 만약, 甲이 채권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채권가압류만을 이유로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한 경우 추후 甲은 혼합공탁으로 공탁서 정정이 가능하다.

-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문1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몰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 ④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문18】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제공이나 수령거부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700만 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乙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1,000만 원)을 공탁할 수 있다.
- ③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하여야 한다.

【문19】 재외국민 등의 공탁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20】 공탁물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관은 계좌입금 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 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 ③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에 규정한 서류(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도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 없이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공탁통지서를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18년 4월 21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공통된 사실관계>

甲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1. 위 <공통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2001. 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X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1.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甲이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5점]

2. 위 1.의 소송 이후,

甲은 2015. 1. 1. 다시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甲은 2001. 1. 1.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02. 1. 1.로 정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채무자를 甲, 근저당권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 甲은 2006. 1. 1.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위 1.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 사실
- 위 1.의 소송 진행 중, 乙은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甲)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그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원고(甲)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가. 甲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5. 1. 1.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적시하시오. [5점]

민사법 5-2

나. 甲의 주장에 대해 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1.의 소송에서 응소함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 1.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한다.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20점]

3. 위 <공통된 사실관계>와 1. 및 2.의 소송과 달리,

甲이 乙과의 사이에 2001. 1. 1.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변제기 2002. 1. 1.)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2006. 1. 1. 물상보증인 甲이 乙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06. 6. 1. 제1차 변론기일에서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乙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1. 1. 甲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5. 1. 1. 이번에는 채무자 丙이 乙에 대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위 2006. 6. 1.의 응소행위로 인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乙의 항변은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20점]

【문 2】

<공통된 사실관계>

甲은 2015. 1. 1. 乙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6.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인 2016. 3. 1. 자신의 소유인 X토지(당시 시가 7억 원)를 그의 처남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위 <공통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甲은 2016. 4. 1. 뒤늦게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X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2016. 6. 1. 乙에게는 매매계약 당시 X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2017. 5. 1.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상대로 위 2016. 3.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이에 ① 乙은 자신을 상대로 한 甲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고, ② 丙은 甲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乙과 丙의 각 항변이 타당한지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청구원인 단계에서의 요건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따라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위 <공통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한편 위와 같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X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A은행인 채권최고액 3억 원(피담보채무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B은행인 채권최고액 2억 원(피담보채무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존재하고 있었다. 丙은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6. 4. 1. A은행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면 이러한 판결이 가능하겠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나. 법원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丙에게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31. 현재 甲이 가진 대여금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6억 5천만 원이고, X토지의 시가는 8억 원이며, B은행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은 변동이 없다). [10점]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 1】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의 채권자인 丙은 甲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다.

※ 위와 같은 공통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 각 경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다음 1, 2문항 물음은 서로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乙에 대하여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위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丙의 참가신청에 대한 접수 후 사무처리 방법과 심리방식을 설명하시오. [20점]

2.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丙은 대여금 청구의 소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이하 ‘추심금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가. 추심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나.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문 2】 조서기재의 이의 및 정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다만,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정정은 제외함). [25점]

【문 3】 아래의 사실관계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답안 작성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시오).

<사실관계>

- 원고 甲은 2017. 10. 15. 피고 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 乙은 소장부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제1회 변론기일 및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지만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 참여관은 원고에게 제3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두 차례 송달 불능되었다.
- 참여관은 집행관 송달로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재송달하였는데 송달불능되었고, 그 송달통지서에 원고가 최근 사망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고 다시 집행관 송달로 재송달하였음에도 마찬가지였다.
-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쪽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문건이나 신청도 접수되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위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25점]

2018년 4월 21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1. ○○중학교 소속 전체 교사 60명 중 20명은 ‘8·15 동지회’라는 명칭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A는 위 ‘8·15 동지회’의 회원인 교사이다. 한편, ○○중학교 소속 학생들, 그 학부모들,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 ‘8·15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대체로 알고 있다. 甲은 위 ‘8·15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등교를 거부하도록 선동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A4 용지 1면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학교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2. 乙은 평소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양평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지수 및 재정자립도가 모두 최하위라는 거짓 내용의 A4 용지 1면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군청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1, 2의 각 사실관계 하에서, 甲이 A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乙이 양평군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설명하시오(甲과 乙이 각 적시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는 없음을 전제로 하며, 결론은 대법원 판례에 따름). [40점]

【문 2】

甲은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그런데 甲은 丙주식회사의 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丁은행에 乙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甲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특별법 위반은 제외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각 논거를 설명하되, 결론은 대법원 판례에 따름). [30점]

형사법 4-2

【문 3】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소유의 A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해당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丙이 乙로부터 A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사실은 丙이 丁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금전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A부동산에 관하여 丁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丙이 甲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30점]

2018. 4. 21.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아래의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설명하고(적법여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를 것),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도 추가로 설명하시오(별첨 관련 법률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가정폭력을 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적법성 여부(위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5점]

나. 가정폭력을 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적법성 여부(위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5점]
-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절차의 잘못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5점]
- 피고인은 예비역 육군대령으로서, 개별범죄로 저지르는 경우 보통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군사범죄인 군형법상 군용물절도죄와 개별범죄로 저지르는 경우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 검사는 경합범인 위 죄에 관하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군형법상 군용물절도죄에 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가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5점]

형사법 4-4

【문 2】

전문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실질은 진술자들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위 회신이 어떤 요건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피의자신문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3. A가 작성한 진술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이 A의 호주 주소가 기재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A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소환장 송달 전에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호주에 거주하는 A가 증언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는 아니나 비자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추가절차 없이 A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 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 검사 제출의 유죄증거 중 전문증거들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나.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를 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제1심의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문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30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별첨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군로역인 군인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 ② 군사법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③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그 밖의 재판권)

-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 ②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 ③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④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